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상임 등〉
■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02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등	4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시 법관 배제 등	1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수, 임기 규정 등	25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신설 등	3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현직 법관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관행적으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왔음.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겸직하며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함에 따라 위원장직의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이는 선관위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소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제5조제7항 단서)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및 제12조제2항).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신설).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함(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 등 (안 제5조제1항 등)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 ② ·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第5條(委員長) ① ----- ----위원장 1명을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 략)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 략)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대한민국헌법」 제114조²⁾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 임기, 구성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수·임기 및 구성>

구분	정수	임기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6년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6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3년 (1회 연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6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4인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성명	직위	임기개시일	임명방식
1	노태악	위원장	2022. 5. 17.	대법원장 지명 후 호선
2	김필곤	상임위원	2022. 5. 17.	대통령 임명 후 호선
3	김창보	위원	2019. 3. 19.	대법원장 지명
4	이승택	위원	2020. 3. 19.	대통령 임명
5	정은숙	위원	2020. 3. 19.	대통령 임명
6	조병현	위원	2021. 1. 8.	국회 선출
7	조성대	위원	2021. 1. 8.	국회 선출
8	박순영	위원	2021. 3. 17.	대법원장 지명
9	남래진	위원	2022. 8. 2.	국회 선출

「대한민국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며,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장직을 겸임해 왔음.³⁾

3)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해 각 1인을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면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관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겸임해 왔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이하 생략)

제12조(위원의 대우)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이하 생략)

대법관인 위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그간의 관례는 1960. 6. 15. 시행된 헌법 제75조의⁴⁾에서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 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한 이후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하게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도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관례적으로 호선해 온 것으로 보임.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갖추는 필요가 있는데,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법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신분이 보장되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임명 절차상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개인의 자질과 역량, 객관성 등이 일정부분 검증될 수 있어 대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⁵⁾

그러나,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하여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4)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 6. 15.] [헌법 제4호, 1960. 6. 15., 일부개정]

제75조의2 선거의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는 대법관중에서 호선한 3인과 정당에서 추천한 6인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위원장은 대법관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중앙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5)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원칙에 반하고, 국가기능상 특수행정분야인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헌법 차원의 문제제기⁶⁾ 또한 있어 왔음.

또한, 현실적인 차원에서도 (대)법관인 위원이 비상임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현재의 체계로는 복잡해지는 선거절차사무와 급증하는 선거범죄 단속사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책임성과 대표성, 전문성,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고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으로서의 예우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6)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상의 문제점, 김태홍, 공법학연구, 2012

[발언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호선 관행의 문제점,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7242> 등

먼저,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우와 보수는 부총리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바,

예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9인 중 호선되는 절차를 거치므로 국회 동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과 동일한 예우를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고,⁷⁾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의전서열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다음이므로 국무총리급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⁸⁾

반면,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작용과 기능을 입법, 집행, 사법, 헌법재판, 선거관리의 다섯 가지 분야로 유형화하여 각각 그 담당기관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견해도 있으므로,⁹⁾ 이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동일한 예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참고로, 「대한민국헌법」의 편제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제3장), 정부(제4장), 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다음인 제7장에 위

7)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2006.8.24.) 심사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위하여 호선 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임종인 위원 등)

8)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2006.8.24.) 심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대법관(장관급 예우)이 관례적으로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실제 의전서열이 국무총리보다 뒤에 있음(임종인 위원)

9) 허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선거관리 제41호(1995), 2면

치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¹⁰⁾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예우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의 장이라는 측면 및 의전서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예우 및 자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폐지하면서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예우 및 자격(1급 공무원 상당)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적용하고 있음.

다만, 현행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지방법원장의 예우가 차관급이라는 점,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대비되는 시·도지사에게 대한 예우가 차관급(서울특별시장은 국무위원급)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적절한 예우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1급 공무원 상당으로 예우하여 상임화할 경우 1년 기준으로 약 26억 1,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10) 「헌법재판소법」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위원장 상근 시 소요 예산>

(1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보 수					직책수행 경 비
		소 계	봉 급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도 전체(17개)	2,618,340	2,388,840	2,199,120	8,160	28,560	153,000	229,500

※ 시·도위원장은 1급, 구·시·군위원장은 3급으로 가정하여 예산 추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둘째,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적정 임기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대한민국헌법」 제114조¹¹⁾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장으로 호선 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¹²⁾

11)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2)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의 임기가 종료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자진해서 사임하는 것이 관례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다른 헌법기관의 장¹³⁾과 대비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단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¹⁴⁾

<헌법기관장 등 주요인사 임명절차 비교>

구 분	임 명 절 차(헌법규정)	임 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6년
국회의장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	2년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6년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6년
국무총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

13) 대통령(5년), 국회의장(2년), 대법원장(6년), 헌법재판소장(6년)

14)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는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을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한을 분배한 대등한 권력행사기관 사이의 권한에 관한 다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및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 정부 및 법원과 선거관리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거하여 헌법의 위 규정을 명확하게 구체화한 것이다(헌재 1998. 7. 14. 98헌라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

1.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 1명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 경우 우리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헌법기관의 위상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각종 선거관리 사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위와 예우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에 준하는 정도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 선거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집행업무의 난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무 처리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안정성을 제고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조직 구조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상근제와 함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상근제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구·시·군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상임화 국회 논의 결과>

1. 제17대 국회

구 분	최규식 의원안('05. 11. 28.)
행정자치 위원회 논의결과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원안가결(2006. 2. 14.)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상근 위원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통과
법제사법 위원회 논의결과	•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부(2006. 2. 20.) •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 상정 후 논의(2006. 8. 24.) •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법안심사 관련쟁점	• 위원장 선임 방식 - 다른 헌법기관과 같이 국회 동의 절차 필요 VS 현행 헌법상 국회 동의 불가 • 상근제 도입 시기 - 차기 위원장부터 적용 VS 현직 위원장은 상임을 전제로 호선되어 즉시 시행 • 위원장 예우 수준 - 헌법재판소장 수준 예우 VS 국무총리 수준 예우

2. 제21대 국회

구 분	한병도 의원안 ('22. 6. 16.)	김용판 의원안 ('23. 6. 9.)
중 앙	• <u>위원장 상근</u> (헌법재판소장 예우) → 위원장은 ① 공무원이 아닌 사람, ②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 중에서 호선 • 상임위원 폐지	• <u>위원장 상근</u> • 상임위원 유지
시·도	-	• <u>위원장 상근</u> ※ 상임위원 유지
구·시·군	-	• <u>위원장 상근</u>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의 부위원장으로 추천되는 자격 중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
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16 –

黨이 추천하는 委員은 選舉期間開始日(委託選舉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國民投票案公告日후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위촉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委員이 될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教育公務員은 居住要件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法官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法官과 法院公務員 및 教育公務員 이외의 公務員은 各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⑦ ~ ⑬ (생략)

④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副委員長 1人을 두며 당해 選舉管理委員會委員중에서 互選한다. 다만,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공직선거법」 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2개이상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舉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開票所마다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 -----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委員은 각각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삭 제>

⑦ ~ ⑬ (현행과 같음)

⑦ -----

-----, -----

-----, -----

-----선거관리 및 선거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 ----- ----- -----.
⑤ (생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먼저,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인이며,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함.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직위	선정방법	명	비고
위원장	법원장 추천 후 호선	1	지방법원장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명	1	
위원	교섭단체 추천	2	
위원	법원장 추천	2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추천	2	
계		8	

다음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9인이며, 위원은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

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정당이 추천하는 위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후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할 수 있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직위	선정방법	명	비고
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촉 후 호선	1	부장판사
부위원장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촉 후 호선	1	
위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촉	4	
위원	교섭단체 추천	2	
계		8	

다음으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이며,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4인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직위	선정방법	명	비고
위원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촉 후 호선	1	
부위원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촉 후 호선	1	
위원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촉	2	
위원	교섭단체 추천	2	
계		6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법관과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관을 우선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한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개표소마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인을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지역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대통령 임명	자체 선정	정당 추천	지방법원장 추천	계
중앙	중앙	3	3	3				9
시·도	서울				3	2	3	8
	부산				3	2	3	8
	대구				3	2	3	8
	인천				3	2	3	8
	광주				3	2	3	8
	대전				3	2	3	8
	울산				3	2	3	8
	경기				3	2	3	8
	강원				3	2	3	8
	충북				3	2	3	8
	충남				3	2	3	8
	전북				3	2	3	8
	전남				3	2	3	8
	경북				3	2	3	8
	경남				3	2	3	8
	제주				3	2	3	8
	세종				3	2	3	8
구·시·군	서울				134	50	8	192
	부산				88	31	8	127

구·시·군	대구				49	18	5	72
	인천				50	20	5	75
	광주				29	10		39
	대전				30	9		39
	울산				29	10	1	40
	경기				263	83	6	352
	강원				107	36		143
	충북				80	27	3	110
	충남				90	32	1	123
	전북				88	27		115
	전남				109	42	20	171
	경북				134	44		178
	경남				125	44	5	174
	제주				12	3		15
읍·면·동	서울				1,693	831		2,524
	부산				795	366		1,161
	대구				561	229		790
	인천				600	249		849
	광주				379	153		532
	대전				310	145		455
	울산				214	110		324
	경기				2,360	1,054		3,414
	강원				712	233		945
	충북				589	305		894
	충남				802	308		1,110
	전북				943	287		1,230
	전남				1,165	301		1,466
	경북				1,260	256		1,516
	경남				1,180	388		1,568
	제주				163	54		217
	세종				83	29		112
총계		3	3	3	15,277	5,818	113	21,21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현직 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겸직하여 비상임화가 초래되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의 책임운영과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

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되는 자격 중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장의 상임과 맞물려 선거관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화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위원 자격요건의 타당성 문제임.

개정안은 위원 자격요건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선거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 종종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으므로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 처리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¹⁵⁾ 현행법 제6조제3항¹⁶⁾에 따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15)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6)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상임위원)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위원의 자격요건에 선거범죄와 정당사무 중 어느 것이 위원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의 요건을 삭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의 법관,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삭제되어 직렬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제약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 제고의 적절한 방안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4조제5항을 보면,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에 대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각각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현행법에서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의 위원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위촉되므로, 개정안 제4조제5항의 내용은 이와 중복되어 개정 실익이 없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관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임 문제는 현행 위원장 비상근제도하에서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고려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만약 위원장 비상근제를 상근제로 변경한다면 현직 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수, 임기 규정 등(안 제6조 제1항 등)

개정안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수, 위원장·상임위원의 호선 방법, 상임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u> <u>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u> <u>③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選舉 및 政黨事務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指名하되 常任委員으로서의 勤務上限은 60歲로 한다.</u> <u>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u>	<u>제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2명의 상임위원을 둔다.</u> <u>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한다.</u> <u>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u>

2. <u>大學에서 行政學・政治學 또는 法律學을 담당한 副教授이상의 職에 5年이상 근무한 者</u> 3. <u>3級이상 公務員으로서 2年이상 근무한 者</u> <u><신 설></u>	<u>제6조의2(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호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호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	---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¹⁷⁾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되, 상임위원의 근무상한은 60세로 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

17)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정수, 위원장·상임위원의 호선 방법, 상임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그 직을 겸하는 형태로서, 위원장이 상임으로 전환될 경우 실질적으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한 상임위원은 그 효용이 없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그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만 임명되는 관행이 있어 왔고,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한 취지로 미루어 볼 때, 개정안은 일정 부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 국회가 선출한 위원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하도록 하는 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타 입법례는 대부분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⁸⁾

그 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호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은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상임위원의 호선절차에 관하여 규정¹⁹⁾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관례적으로 호선해왔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위원이 3년의 재임기간을 마치면 관례적으로 자진사임해왔음.

18) 「식품위생법」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게임물관리위원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역사 분야에 종사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9)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호선 및 감독권)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의 호선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된 상임위원의 재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가 3년 미만인 때에는 그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그런데,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²⁰⁾를 하위법령으로 단축하는 위헌적인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개정안은 상임위원의 임기를 오히려 현행보다 단축시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²¹⁾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2항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할 경우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각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호선제를 폐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 하에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0)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21)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되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고,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장이 균등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 신설 등(안 제11조의2)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1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한다.</u> <u>② 소위원회는 상설로 한다.</u> <u>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한다.</u> <u>④ 소위원회는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 조직이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필요 사항>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안에 대한 의견표시(중요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제정·개정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3. 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선례 변경이나 새로운 선례 형성이
필요한 사항
4.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나. 「국가재정법」 제58조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5. 법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상시로 개최되지 않고 있어, 복잡해지는 선거절차사무 대응 등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소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적 책임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로 하여금 중요한 안건을 다루도록 하는 바, 상설 소위원회 운영으로 신속하게 현안에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안건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한 안건도 소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 의결이 가능하므로,

중요한 안건이라는 명목으로 합의가 어려운 안건을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경우, 자칫 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형해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상임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2인의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바, 위원장이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다른 6인의 비상임위원을 소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상임위원을 2인으로 두도록 하는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²²⁾은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면서

2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 등 그 밖의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을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비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진실화해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소위원회	상임위원 1인(위원장), 비상임위원 3인
2소위원회	상임위원 1인(위원장), 비상임위원 3인

이에, 비상임위원을 소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간 의사결정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비상임위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취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심의와 합의를 거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으로 소위원회를 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심의·조정, 조사·연구, 기타 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를 둔다.

성하고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경우 우리 헌법상 합의제 정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